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4. 11. 19 선고 2024가단305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영남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장익현

피고A

소송대리인 B

변론 종결2024. 10. 22.

판결 선고2024. 11. 19.

주 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6. 30.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 7. 3. 접수 제1447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2021. 9. 2. C과 보증원금 9,500만 원, 보증기한 2024. 9. 2.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이를 담보로 2021. 9. 10.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는, C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보증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할 경우 C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손해금, 원고가 구상금 채권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3) C은 2023. 9.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대출 원금 변제를 연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24. 1. 8. C을 대위하여 D은행에 대출원리금 78,201,538원을 변제하였다.
- 4) 원고는 2024. 1. 8. 위 대위변제금 중 261,060원을 회수하여 구상금 원금에 충당하였다.
- 5) 원고가 위 구상채권 확보를 위하여 대지급한 법적 절차비 중 미회수 잔액은 887,258원이다.

나. C의 처분행위

C은 2023. 6.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3. 7. 3. 피고 앞으로 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다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된 상태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대출원금의 변제가 연체되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가까운 장래인 2024. 1. 8. 원고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나)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은행, 주식회사 E, 재단법인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은 아래와 같이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적극재산 합계 336,539,000원]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134,790,800원
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195,840,000원
3	안동시 F 도로 86m ²	5,908,200원
합계	336,539,000원	

[소극재산 합계 357,578,824원]

1	D은행	142,000,002원
2	G	12,000,000원
3	경북신용보증재단	68,458,303원
4	국민건강보험공단	3,698,410원
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0,433,813원
6	H	23,000,000원
7	E	10,000,000원
8	한국장학재단	12,988,296원
9	피고	55,000,000원
합계	357,578,824원	

2) C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추정 가) 채무자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언니인 B이 C에 대하여

55,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2023. 3. 2.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대항력이 없다)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이후 C와 사이에 이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인 채권자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이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었음을 피고가 인식하였다. 나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은 공동담보의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자가 통정허위표시로서 사해행위를 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진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수익자의 선의가 입증되는 것이 아니며, 수익자의 악의가 채무자의 개개의 채권 모두를 인식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인경

별지